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우리가족안심C통합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2101

나. 보험의 종류: 1형 (50% 선지급형), 2형 (80% 선지급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형(50% 선지급형)	2형(80% 선지급형)	
종신	5년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63세	월납
	10년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57세	
	15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3세	
	20년납	만 15세 ~ 51세	만 15세 ~ 49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47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의무부가 특약의 종류 :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나. 의무부가방법 및 부가한도

: 특약 가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부가한다.

다. 의무부가사유

: 암에 대한 보장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특약을 의무부가하여 운영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납입한도로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times$ 12 $\times$ 2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 및 ‘(2)’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산출시 적용된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월납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다만, 2억 9,6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보험가입금액 3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5.0%

나. ‘가’에 따라 고액계약 할인이 적용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월대체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계약관리비용은 고액계약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한하여 최대 35개월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나.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해지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나. ‘가’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 및 해당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공제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월계약 해당일 기준 1개월 동안 1회 이내에 한한다.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한다. 또한,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beta 1$), 회사채 가중치($\beta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end{aligne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_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균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헷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 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약관에서 정한 “CI/LTC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하며, 중도인출로 인한 기본사망보

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 도달 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한다.

14.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보장보험금 보증비용,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5.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함)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함)으로 정한다.

16.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7.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또는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8.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19.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0.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기요양상태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상태”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나’ 항과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한다.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가’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린다.

다.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가’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는다.

- (1)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및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2)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적용함
- (2)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의 인하 또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

21. 기타

가.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1)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5%” 중 가장 큰 금액을 “기본보험금”으로 한다.
- (2) ‘(1)’에서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일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함으로써 교부 및 설명한 것으로 본다.

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의 경우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

액」을 지급한다.

라.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에 관한 사항

- (1)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에 대하여 국내의 경험통계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산출하며 신계약에 대해 적용한다.
- (2) 중대한 질병, 수술,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발생률 재산출로 인해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 기산출된 위험률의 안전할증비율에 해당하는 기존계약의 과거 납입보험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 증액 등으로 환원할 수 있다.

마. 보험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 (3) 납입보험료 관련 사항(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한도 등)

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아.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자.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